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안
번호

467

제출연월일 : 1998. 3. 13.

제출자 : 고성군수

1. 제안이유

재난관리법이 개정('97.8.30. 법률 제5404호)되고, 동법시행령 전문이 개정('98. 2. 24. 대통령령 제15,662호) 공포되어 '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가.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도의 1000분의 2의 해당금액과 그 기금의 운용수입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토록 함(안 제2조).
- 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토록 하고, 고성군금고에 계좌 설치로 예치 관리토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 군수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중 기금의 지원범위를 제한하고 지역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용자코자 할 경우는 민간소유시설등의 재난발생위험이 있고 소유자·관리자의 경제능력이 없어 안전진단을 못하는 경우와 임대주택으로서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주민의 부담 능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함(안 제5조).

3. 제정근거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고성군의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운용) 군수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고성군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군수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고성군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고성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군수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재난위험시설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등 정비
2. 중점관리대상시설등의 안전진단
3. 법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서의 이주지원

4.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을 때에 인명구조 및 대피시설의 응급복구등 응급조치
5. 재난의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1.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로서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서의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제6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재난관리계장이 된다.

제7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한 회계관리는 고성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결산서를 보고받은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성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